

규정 제 · 개정

1.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강의교수위촉규정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
- 2) 신입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가능
- 3) 전공심화과정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설기관 설립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대비 조직 개편

나. 주요내용

- 1) 비전임교원에 강의교수 신설에 따른 조항 개정
- 2) 신입생 중 입학하기 전 휴학은 고등교육통계 정의에 맞지 않음
- 3) 교무처에 부설기관으로 학사학위센터 조직 개편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6조(교직원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교원 외에 <u>겸임교원, 초빙교원, 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교직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겸임교원, 초빙교원, 명예교수, 강의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8조(휴학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<u>있다.</u></p>	<p>제28조(휴학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<u>있다. 다만, 신입학생, 재입학생, 편입학생의 입학학기의 휴학은 입학일자부터 휴학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(생략)</p> <p>1. 교무처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, <u>NCS인증센터</u>를 둔다.</p> <p>2. ~ 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NCS인증센터, 학사학위센터</u>를 둔다.</p> <p>2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	<p>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